

ICCAT 제2차 패널1 회기간 회의 참석 결과

□ 개요

- (일시/장소) '22.10.13(목) 16:00~01:00 / 화상회의
- (참석자) 21개 회원국, 3개 비회원국, 8개 NGO 등 약 150명
 - * (한국대표단)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 심수빈 사무관, 협력센터 양재걸 전문관
- (주요내용) 눈다랑어 총허용어획량(TAC) 및 어획할당 기준, 어류군집 장치(FAD) 규제 조치 등 열대다랑어 보존관리조치 개정 논의

□ 주요결과

1. 눈다랑어 TAC*

* '14-'15년: 8.5만톤 '16-'19년: 6.5만톤, '20년: 6.25만톤, '21년: 6.15만톤, '22년: 6.2만톤

○ (주요의견)

- 중미CPC들은 어업은 본래 불확실성이 있음을 언급하고 7.5만톤 주장
- EU는 ① 연안개도국 개발 열망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7.5만톤이 필요하고, ② PGK* 82%는 전례 없는 접근으로, ③ 지난 자원평가에 적용된 최대연령 25세 가설은 비현실적이므로, 사전예방적인 접근은 이미 과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언급

* Probability of Green Kobe : 자원상태가 Kobe 매트릭스 녹색 영역에 분포할 가능성

- 영국, 세네갈, 미국, 한국은 7만톤을 지지
- 일본은 두 입장을 조율하기 위해 안전장치*를 도입한 7.5만톤 제안
 - * 차기 자원평가 후 자원상태 전망치가 PGK 60% 또는 70% 이상이 되도록 TAC 조정
- CPC들은 TAC가 타 조치들과 함께 패키지로 처리되어야 함에 공감
- 연례회의에서 모든 수치(6.25만, 7만, 7.5만)를 괄호로 두고 논의 예정

2. 눈다랑어 어획할당 기준

○ (의장안)

- 19-02 4항 구분(4개 그룹)에 따라 그룹별 할당을 부과*하고 전체 TAC 중 5%를 유보하여 어업 개발하고자 하는 대서양 연안개도국에 할당

* a) 그룹: 40-45%, b) 그룹: 16-18%, c) 그룹: 22-25%, d) 그룹: 10-13%

○ (주요의견)

구분	주요의견
EU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19-02의 그룹 구분은 국가의 개발된 정도를 미반영하므로 부적절함 · 고소득 연안국과 원양조업국이 연안개도국에게 할당 양보 필요 · 16-01 쿼터표 내 CPC는 '15-'20년 평균어획량으로 어획한도 설정 · 당장 조업하지 않는 CPC에게 할당하는 결과를 지양해야 하고, 당장 조업하지 않는 CPC가 장래 조업기회를 상실하지 않도록 해야 함 · 미사용 할당은 유보 쿼터로 두고 사용 의도 있는 CPC가 사용 가능해야
일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할당이전은 급진적인 방식이 아닌 점진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함 · TAC 증가에도 불구하고 일본 할당이 증가하지 않는 것은 수용 불가 · 코로나 등 과거 일시적인 어획 감소로 미래 활동이 제약되어서는 안됨 · 미소진 한도의 일부는 이월 가능해야 함 · 전배는 협상 말미에 타결 가능성을 높이므로 현시점 배제는 부적절
중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현재 조업하고 있지 않지만 미래 조업 가능성도 고려 필요 · 어획량 3500톤을 기준으로 대규모 수확국들의 어획량 감축 필요 · 할당 기준연도는 '14-'20년 중 4년을 선택 · 미할당분을 마련하여 조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CPC에 할당하고, 미할당분이 부족해지면 기존 CPC 할당 재분배 필요 · 미소진 어획한도는 보존 관점에서 보아야 하고 전배 제한 필요
남아공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소규모 수확국은 명시적인 어획한도 설정이 아닌 trigger 설정 필요 · 이월은 녹색영역에 있을 때에만 허용
미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소규모 수확국 기준 : 1999년에 어획량 2100톤 미만인 선망 없는 CPC · 소규모 수확국 배제(어획한도 설정) 기준 : ① 어획량 1575톤 초과 ② 선망 어업 ③ 어획한도 전배·이월
한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할당은 최근 평균어획량만이 아닌 역사적 어획, CPC의 보존 및 이행 노력, 연안개도국 개발 열망 등 모든 관련 요소 고려 필요

3. 어류군집장치(FAD) 규제 조치

○ (논의배경)

- 눈다랑어 치어 어획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는 선망선 FAD에 대한 규제방법(금어기, 개수 제한, 세트 제한 도입 등) 논의

○ (주요의견)

- 온두라스는 중미CPC들을 대표하여, 현행 금어기(72일)를 2개월로 단축할 것을 주장하고, 고정 1개월 + CPC 선택 1개월을 제안
- EU는 ① 현행 FAD 조치의 효과성에 대한 과학위 분석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현행 조치 유지를 주장, ② 세트 수 제한 도입을 위한 과학위 작업 지원 필요를 언급 ③ 해양쓰레기 방지 및 책임성 부과를 위해 FAD 등록부 설치를 제안
- 일본은 FAD에 대한 과학위 조언은 분명하므로 FAD 조치 완화는 수용 불가하고, 세트 수 제한 도입 필요를 주장
- 미국도 금어기 단축은 수용 불가하고, 금어기 확대(고정 3개월 + CPC 선택 1개월) 및 점진적인 개수 감축(4년에 걸쳐 300개 > 250개)을 제안
- 사무국은 일부 선망 어업 CPC들의 경우, 노력량(세트 수) 데이터만 제출하고 어획량 데이터를 제출하지 않았음을 보고

4. 기타

○ 연승 옹서버 커버리지

- 일본은 전자모니터링(EM) 표준이 아직 미수립(작업반 논의 중)되었으므로 연승 옹서버 커버리지 조항*은 '24년부터 시행되어야 함을 언급

* 눈다랑어, 황다랑어, 가다랑어를 목표로 하는 전장 20m 이상인 연승선은 2022년까지 어획 노력의 최소 10%에 대해, 사람 또는 EM을 통한 옹서버 관찰을 보장해야 한다. 이를 위해 상설작업반은 과학위원회와 협력하여 EM 최소기준에 관해 권고한다.

○ 감시·감독·통제(MCS) 조치

- EU는 개정 의장안에 1차 회의에서 EU가 제안한 전채 조치(입항 전채 20%) 및 지역옵서버 프로그램 부활도 포함되어야 함을 언급
- 미국은 열대다랑어 혼획 선박도 선박 목록에 등록되어야 모니터링이 가능하고, 이를 위한 제안서를 상설작업반에 제출할 것임을 언급

○ 향후 작업

- CPC들은 1차 회의, 2차 회의, 서면 의견 등 지금까지 CPC들이 제기한 모든 의견을 반영한 제안서로 논의할 것을 희망
- EU는 의견 있는 CPC는 반드시 본문에 대한 수정제안문을 제출*해야 하고, 의견만 제출하는 것은 논의에 어려움을 초래할 것임을 언급

* 개정안 본문에 텍스트를 제안한 CPC 이니셜을 괄호로 명시(예, [EU] [US] [JPN] [KOR])